

중국 환경규제 소식

본격적으로 다양한 환경규제 도입에 나선 중국 정부

중국정부, 올해 15개 환경보호 관련 법률 정비 계획

중국은 2009년 ‘대기오염법(수정안)’을 비롯한 15개 환경보호관련 법률 및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계획이다.

국무원이 발표한 ‘국무원 2009년 입법공작계획(國務院2009年立法工作計劃)’에는 ‘대기오염법 : 수정(大氣污染法 : 修訂)’, ‘환경감측관리조례(環境監測管理條例)’, ‘축금양식오염방지조례(畜禽養殖污染防治條例)’ 등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와 관련된 법률·법규의 제정, 수정, 또는 심의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국무원이 정비할 법률은 아래 표와 같다.

국무원의 2009년 환경보호 관련 입법계획

분류	법규명칭
에너지	‘에너지법(초안)’ 能源法(草案)
	‘석탄법(수정)’ 煤炭法(修訂)
	‘광산자원법(수정)’ 鑛產資源法(修訂)
자원	‘절수조례’ 節約用水條例
	‘태호관리조례’ 太湖管理條例
	‘습지보호조례’ 濕地保護條例
	‘대기오염법(수정)’ 大氣污染法(修訂)
	‘축금양식오염방지조례’ 畜禽養殖污染防治條例
	‘오존층소모물질관리조례’ 臭氣層消耗物質管理條例
오염물	‘오염배출허가증조례’ 排污許可證條例
	‘성진배수 및 오수처리조례’ 城鎮排水及污水處理條例
	‘폐차회수관리방법’ 報廢汽車回收管理辦法
	‘환경감측관리조례’ 環境監測管理條例
기타	‘기상탐측환경 및 시설보호조례’ 氣象探測環境及設施保護條例
	‘극지활동관리조례’ 極地活動管理條例

출처 : KOTRA 자체 정리

‘순환경제촉진법’(循環經濟促進法) 시행

중국은 2009년 1월 1일부로 ‘순환경제법’ 시행에 들어갔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순환경제는 생산, 유통 및 소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환경 활동, 자원절약 활동, 재활용 활동의 총칭이다. 순환경제는 ‘자원-제품-자원재생’ 및 ‘생산-소비-재활용’의 방식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순환경제의 6가지 관리제도로는 (1)순환경제발전 계획 제정, (2)에너지, 자원 소모량, 오염물 배출량 통제, (3)순환경제평가지표시스템 설립, (4)생산자 책임 확대제도 실시, (5)에너지소모 및 물소비량이 많은 기업에 대한 중점 감독관리 실시, (6) 에너지통계제도 및 순환경제표준체계 구축 등이 있다.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 : 예전에는 생산자가 제품 자체에 대해서만 책임지는데 그쳤으나 생산자 책임 확대제도는 생산자의 책임 범위를 제품 폐기후의 회수, 재활용, 처리 등에 까지 확대함

순환경제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표식(energy efficiency labels) 등 제품의 자원, 에너지 소비표식제도를 실시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효율표식관리방법’은 2004년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가품질검험검역총국 및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아래와 같은 표식을 제품 표면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다.



사진 : 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

또한 순환경제법 제18조는 국가가 장려, 제한, 도태하는 기술, 설비, 재료 및 제품 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태목록에 포함되는 설비, 재료 및 제품에 대해서는 생산, 수입, 판매, 사용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 발표

중국은 2008년 2월 25일 국무원 명의로 ‘폐기 전기전자제품 회수처리 관리조례’(廢棄電氣電子製品回收處理管理條例)(이하 조례)를 발표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 조례는 폐기 전기전자 제품의 회수, 처리활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전기전자제품의 생산자는 생산과정에서 친환경, 무공해의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하며 제품 설명서에 유해물질 함유량 및 회수 처리 시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수리, A/S 제공업체는 해당 영업장소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폐기 전기전자제품의 회수정보를 표시해야 하고 회수된 제품은 자격을 갖춘 기업이 처리해야 한다.

생산기업은 원재료 선택 단계부터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한 원자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 이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기술 혁신과 효율적인 관리 강화가 필수적이다.

논의 중인 환경규제 : 환경세 징수

중국정부는 현재 기업에 대한 환경세 징수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환경세 징수 문제는 2005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환경세 징수가 타당성은 있으나 실행에 있어 기업의 세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재정부에서 검토 중인 환경세 징수방안

재정부는 현 시점에서 실행 가능한 방법으로 기존 세제의 개혁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아래는 재정부 정책건의를 해서 현재 검토 단계에 있는 기존 소비세

와 자원세 조정 방안이다.

소비세의 경우 부과범위를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이다. 인(磷, P, phosphorus) 함유 세제, 수은전지, 카드뮴 전지, 오존층 파괴물질, 일회용품, 비닐봉투 등 오염제품과 석탄, 코크스 등 고오염, 고에너지소모 제품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며 납 함유 가솔린 등에 대해 소비세율을 인상한다. 하지만 생물에너지 등 청정에너지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자원세는 희소성, 고오염, 고에너지 소모의 광산 자원에 대해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일부 광물질에 대해서는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세금징수 방식을 변경해 해당 제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을 올리는 방안이 건의돼 있다.

업계 반응 및 시사점

기업들은 이미 오염 배출비용 등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환경세까지 내야 한다면 기업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한 환경세를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면 업종과 오염유발 정도를 세밀하게 구별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환경세 부과대상을 지나치게 세밀하게 적용할 경우 지방정부가 세수확대를 위해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며 몇 개의 등급별로 과세하거나 환경관련 세금과 비용을 포괄하는 종합세로 가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의 환경 관련 세금 및 비용은 오염배출비, 광산자원보상비, 수자원비, 토지손실보상비, 육림비, 경지점유세, 도시유지건설세, 자원세 등이 있다. 일각의 의견처럼 이 많은 세목들을 종합해 하나의 환경세로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재정부가 제안한 기존 세제 개혁방안이 채택되는 경우다. 이럴 경우 개혁방안 통과 시기와 관계없이 시행 시기는 본격적인 경기회복 이후로 미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